

# DMZ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김 창 환\*

## A Study on the Spatial Range of DMZ

Chang-Hwan Kim\*

**요약** : 한국전쟁의 결과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DMZ 지역은 반세기 이상 인간의 관심에서 잊혀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오늘날 DMZ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구의 대상인 DMZ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그마저도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군사분계선과 DMZ, 한강하구 중립지역, 그리고 NLL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공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동해안 고성외의 명호리에서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의 길이는 약 238km(148마일)이고,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정되어 있는 DMZ의 면적은 약 903.8km<sup>2</sup>로 측정되었다. 이는 현재 '155마일 휴전선' 등과 같이 남북을 양분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요어** :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 한강하구중립지역, 한국전쟁

**Abstract** : Korean War resulted in the fact that Demilitarized Zone (DMZ) on the neck of Korean peninsular was totally forgotten by people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But recently, as the concern in this DMZ has been rising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he researches on this subject have been gradually quickening. However, the practical studies about spatial extent of DMZ are very feeble. Even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studies shows that the most of researches had mistakes in the spatial description of MDL and DMZ, neutral territory of Han River estuary, and NLL.

In this study the length of MDL, stretching till the estuary of western Lim-Jin River in Myung-Ho Ri of Goseong region on East Coast, was measured to be about 238km (148miles); the area of corresponding DMZ was proved to be approximately 903.8km<sup>2</sup> (907.3km<sup>2</sup> in the previous studies). Such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decide the terms for calling the space dividing North and South Korea, similarly to "155-mile truce line".

**Key Words** : DeMilitarized Zone(DMZ),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Northern Limit Line(NLL), Han River estuary, The Korean War

### 1. 서론

군사분계선이 지금의 위치에서 한반도를 양분한 것도 벌써 50년이 넘게 지났다. 그동안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방향으로 각각 2km씩 설정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하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한반도를 양분하고 있는 DMZ 또한 5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짝을 띄워 지금은 우리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시작된 금강산 관광·경의선 개통·개성공단 운영·동해선 개통 등 국내·외의 환경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잊혀진 공간이었던 DMZ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통일에 대비한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MZ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인 DMZ에 대한 공간적 범위에 관한 언급에 있어서 대부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는 DMZ의 설정 기준이 되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에 대한 설명은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sup>1)</sup>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DMZ에 대한 공간 범위를 155마일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방향으로 각각 폭 2km로 설정된 띠 모양의 공간이라는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DMZ의 공간적 범위에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illskim@kangwon.ac.kr)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확보가 가능한 지도와 위성영상 등의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DMZ의 위치와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DMZ의 위치와 공간적 범위는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도가 활용된 자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 보다 정확한 자료가 확보될 경우 경계와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1953년 7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DMZ의 공간 범위를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재현한 것이다.

국제법으로 볼 때 비무장화(DeMilitarization)라 함은 일정한 국가영역(육지, 영해, 하천, 운하, 영공 등)에 군대 또는 무기를 주둔·배치하지 않거나 군사적 시설물을 설치·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차중환 등, 2000).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완충지대로 남과 북의 주권이 미치는 못하는 지역이다(김영봉·이문원, 2004).

연구 방법은 군사분계선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이론연구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고,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의 지도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DMZ 설정의 기준이 되는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추출하였다.

DMZ의 생성 과정을 비롯한 배경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경계 및 그 기능의 판단은 지도와 위성영상 판독 등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 지금까지 DMZ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된 단행본, 보고서, 논문, 세미나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DMZ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기술 부분에 중점을 두어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군사분계선과 DMZ의 경계 추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글 어스(Google Earth)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 이미지와 경인문화사에서 1997년도에 출판된 1:50,000 북한지역 지형도<sup>2)</sup>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 지형도에는 군사분계선

이 표시되어 있으며, 구글 어스에서는 DMZ 일원에 대한 공간해상도 1m의 고해상도 영상과 공간해상도 30m의 LandSat 영상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영상이 제공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남북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영상에서 확인한 후<sup>3)</sup>, 그 중간지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분계선을 1:50,000 북한지역 지형도에서 추출한 군사분계선과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의 성격 상 지형도와 위성영상을 병행하여 활용할 경우 자료 해석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북한지역의 축척 1:50,000 지형도에 대한 평면위치 허용오차에 대한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으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는 축척 1:50,000 지형도의 평면위치 이동 허용오차가 25m인 것을 고려할 경우, 북한지역 지형도의 허용 오차는 산지지형인 연구지역의 특성과 최초의 지도제작 시점 등을 고려할 때 25m 보다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DMZ 공간에 대한 개략적인 지형분석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공간해상도 30m×30m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 3. DMZ의 공간적 범위

### 1) DMZ와 한강하구 중립지역 그리고 NLL

정전협정문에 의하면, 휴전지대는 그 구성상 DMZ와 한강하구(Han River estuary)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군사분계선과 DMZ는 육지 부분의 경계선이다. DMZ는 동해안 고성군 명호리로부터 중부의 양구, 화천, 철원을 거쳐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각각 2km씩 설정된 완충지대이다.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화도의 말도(末島, 끝섬)에 이르는 지역은 한강 하구의 중립지역(Neutral Zone (HAN Estuary))으로 남북공용의 특수 구역이다. 한강이 서해로 유입하는 한강하구 수역은 정전협정의 제1조 5항<sup>4)</sup>에 의하여 남북한 쌍방의 민간 선박 모두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이는 육지상의 비무장지대가 남북한의 민간이용을 금지하고



그림 1.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중립지역, 북방한계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전협정 체결 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쌍방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은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데 실패하였다<sup>5)</sup>. 이에 따라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 Mark W. Clark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남한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 활동을 한정짓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sup>6)</sup>을 설정하였다. 북방한계선은 당시의 영해 기준인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지역과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 1996년 7월 이후 북방한계선으로 명칭이 통일됨)을 설정하였다(국방부, 2002).

이처럼 현재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북방한계선(NLL), 한강하구 중립지역, 군사분계선에 의한 비무장지대(DMZ)라는 세 가지 유형의 경계선 또는 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전협정문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DMZ는 육상 부분에 한정된 경계이다(그림 1).

그러나 한강하구 중립지역과 북방한계선이 시작 되는 지점인 우도 사이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ㄴ목에서 서해안 도서지역에 대한 관리권 설정에 경

기도와 황해도의 도 경계선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강하구 중립지역과 우도 사이의 경계는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 경계선으로 추정되며, 국방부(2002) 자료와 축척 1:50,000 지형도의 도 경계선을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계 설정에 있어서 이처럼 명확한 정의 없이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 이 부분의 명칭과 설정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선행연구에서의 DMZ에 대한 공간적 범위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전협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1조 1항 : 한 개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제1조 2항 :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제1조 3항 :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종료 초기에 군사분계선을 기

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후퇴하여 4km 폭으로 설정된 DMZ는 그 동안 남북한 양측의 군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그 폭이 최소 약 750m까지도 축소되었다.

한국전쟁이 반세기 이상 휴전상황에 있는 오늘 날에도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로 인하여 군사분계선과 DMZ에 대한 실질적인 공간적 범위를 지도상에 명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DMZ를 그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DMZ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한국전쟁의 정전협정문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군사분계선과 DMZ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DMZ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에 따른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DMZ에 대한 공간범위와 정의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DMZ를 대상으로 2006년 12월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에서 제시한 군사분계선과 DMZ의 공간적 범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대표적인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군사분계선과 DMZ, 그리고 한강하구 중립지역에 대한 용어의 혼용이 있다. 특히 DMZ와 한강하구 중립지역에 대한 혼동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군사분계

표 1.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DMZ의 공간적 범위

연구자	기술된 DMZ의 공간적 범위	내용적 오류
김동규(2000)	휴전협정 당시 육지 249.4km(155마일), 서해해상 약 200km선이 확정되었으며, 육지 2억7천만평(992km <sup>2</sup> )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한강하구 중립지역이 누락, 비무장 지대의 면적이 부정확
김영봉(2000)	군사분계선은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시의 전투배치선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끝섬에서 고성리의 명호리를 잇는 육지 248km(155miles)와 서해 백령도까지의 해상 약 200km에 설치된 선이며 이 선을 중앙으로하여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57.7.27)에 의거 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km씩 군사시설을 후퇴시킨 지역(약 907km)이며 남측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강화군의 끝섬(말도)에서 임진강하구에 이르는 지역은 한강하구 중립지역임.
변병설·이병준 엄상근·구도완 전성우(2002) <sup>6)</sup>	DMZ의 전체면적은 처음 설치규정상대로 보면 248km×4km = 992km <sup>2</sup> 정도로 한반도 전체의 0.5%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한계선은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북한의 북방한계선도 남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실제 폭이 4km가 되는 지역은 거의 없으며, 그 폭이 직선거리로 700m로 좁혀진 지역도 있어 실제 면적은 907.3km <sup>2</sup> 정도이다.	군사분계선은 굴곡을 지닌 선이므로 248km×4km = 992km <sup>2</sup> 라는 계산방식은 잘못된 것이며, 907.3km <sup>2</sup> 라는 값은 폭 4km의 범위에 대한 면적값으로 생각됨.
김영봉·이문원 이성수(2003) <sup>8)</sup>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선으로서 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선이 가설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물이 군사분계선 155mile을 따라 매 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설치된 표식물의 수는 모두 1,292개다.	200m 간격으로 설치된 표식물이 1,292개일 경우 그 길이는 약 258.2km(160.4 mile)임.
김근영·김현수 이상대·노승만 정달식(2003)	1953년 한국전쟁을 휴전하면서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군사분계선을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배치선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끝섬에서 고성군의 명호리를 잇는 육지 248km와 서해 백령도까지의 해상 약 200km에 걸쳐 지정하였으며 이 선을 중앙으로 하여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졌다.	강화군의 끝섬(말도)에서 임진강하구에 이르는 지역은 한강하구 중립지역임.
지봉도(2004)	법률상 남북접경지역이라 하면 한국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4km, 동서 248km에 걸친 비무장지대(약 907km <sup>2</sup> )를 의미한다.	남북접경지역과 DMZ에 용어의 혼동이 있음.

표 2. 군사분계선의 길이와 DMZ의 면적

구 분	남 한			북한 전체
	강원도	경기도	남한 전체	
군사분계선 길이(km)	159	79	238	238
DMZ 면적(km <sup>2</sup> )	300	148	448	456

선과 DMZ 지역에 대한 거리와 면적이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길이 155마일과 DMZ의 면적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인 군사분계선과 DMZ에 대하여 정의한 내용들에서 대부분 일정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DMZ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도 아무런 비판 없이 재인용되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인 한반도의 분단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접근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DMZ의 공간 범위를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DMZ에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범하였던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 3) DMZ의 공간적 범위 측정

선행연구들에서 기술하고 있는 DMZ의 공간적 범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1:50,000 축척의 북한지역 지형도로부터 추출한 군사분계선을 이용하여 DMZ의 공간 범위를 재측정하였다. DMZ의 공간적 범위 계산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정전협정문에 근거하였다.<sup>9)</sup> 그러나 군사분계선과 남북으로 각각 2km씩 후퇴하여 설정된 DMZ 공간을 지도상에 표시한 후 그 연장과 면적을 직접 도면에서 계산한 것이 이 연구가 문헌조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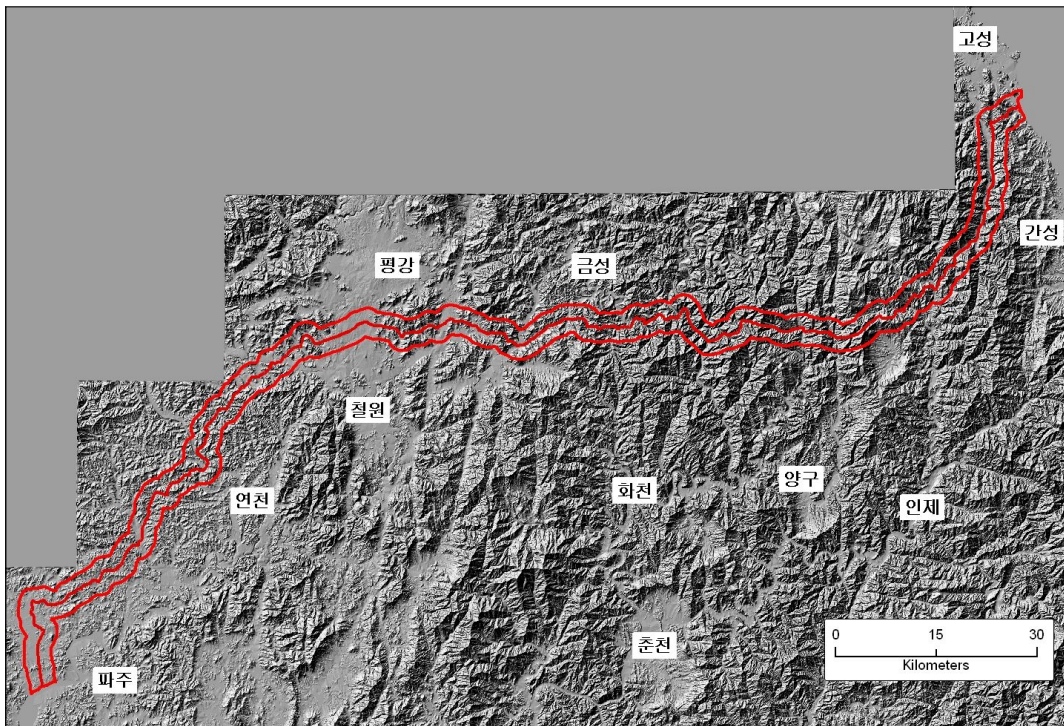


그림 2. DMZ 지역의 음영기복도

의존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다.

DMZ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측정 결과 동해안 고성군 명호리로부터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을 거쳐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의 길이는 약 238km이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정되어 있는 DMZ의 면적은 약 903.8km<sup>10)</sup>이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MZ의 거리 155mile(약 250km)보다 약 7mile(약 12km)이 짧다.<sup>11)</sup> 즉,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분계선과 DMZ의 공간범위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면적 측정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길이는 남한의 경우 강원도가 약 159km로 군사분계선 전체 연장의 약 67%에 해당한다. 군사정전협정문에 근거한 DMZ의 면적은 북한지역이 약 456km<sup>2</sup>이고 남한지역이 약 448km<sup>2</sup>로 북한지역의 DMZ 면적이 약 8km<sup>2</sup> 더 넓게 조사되었다. 남한내에서는 강원도가 약 300km<sup>2</sup>이고 경기도가 약 148km<sup>2</sup>로 강원도의 면적이 경기도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더 넓게 나타났다(표 2).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DMZ는 동해안의 고성외 명호리에서 남강을 경계로 하여 고성군 신탄리까지 남하하다가 고성군과 인제군의 경계인 삼재령을 넘는다. 삼재령에서 부터는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소양강의 상류인 인북천 상류지역을 가로질러 양구군 해안면의 북쪽 경계를 따라 평야지대인 구 철원읍 지역에 이르게 된다. 철원평야를 지난 DMZ는 경기도 연천군의 임진강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남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임진강을 가로지른 후 임진강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끝나게 된다. 육지 부분의 경계인 DMZ의 지형은 동부와 중부의 산악지역과 철원과 김화를 중심으로 한 평야지역, 그리고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구릉지역으로 구분된다(그림 2).

의 대상인 DMZ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그마저도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군사분계선과 DMZ, 한강하구 중립지역, 그리고 NLL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공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에서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의 길이는 기존에 알려진 155마일이 아니라, 238km(148마일)이고,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정되어 있는 DMZ의 면적은 약 903.8km<sup>2</sup>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155마일 휴전선' 등과 같이 남북을 양분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강화도 말섬에서 우도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설정 기준이 없음을 밝혀냈다. 이는 한 국가의 경계선 중 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DMZ와 한강하구 중립지역, 북방한계선 등과 같은 한반도를 분단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용어를 지리적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DMZ의 공간적 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한 자료의 정밀도(축척 1:50,000 지형도) 문제와 군사분계선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인하여 측정된 결과 값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남북한의 군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축소된 DMZ 공간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DMZ 공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이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DMZ 및 남북한의 분단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 4. 결론 및 고찰

한국전쟁의 결과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DMZ 지역은 반세기 이상 인간의 관심에서 잊혀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오늘날 DMZ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구

#### 註

- 1)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
- 2) 구 소련에서 제작한 축척 1:50,000의 북한지도를 1997년 경인문화사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 3) 정전협정 제1조 2항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 철부한 지도에 표시한 위치와 같다.'로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철부한 지도는 축척 1:50,000의 지형도이다. 따라서 구 소련에서 제작한 북한지역 지형도와 축척이 일치하므로, 구 소련에서 북한 지형도에 표시한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정전협정 시 설정된 군사분계선과 일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 소련에서 북한지역 지형도를 제작할 때 군사분계선 지역에 대한 항공측량이나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군사분계선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도는 1950년대의 지형도를 편집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4) 정전협정 제1조 5항 :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 5)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의하면, 상대방지역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모든 병력을 철수하며 상대방지역의 연해도서란 현재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 당시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한다. 즉, 황해도-경기도 도계선 북서쪽 도서 중 백령도 등 5개 도서는 남측 통제하에 두고 나머지는 북측 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북방한계선은 1953년 북방한계선 설정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쌍방이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지만, 최근 북한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2002년의 서해교전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 7) 2003년에도 동일한 공간 정의가 사용됨. (전성우·변병설·이병준. 2003.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19.)
  - 8) 2004년에도 동일한 공간 정의가 사용됨. (김영봉·이문원. 2004.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국토연구 41권. p.5.)
  - 9) 오늘날 남북한 양측은 군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정전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DMZ 공간의 상당부분을 침범하여 대치하고 있어 그 경계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경계를 연구대상으로 하기에는 국가 안보상의 문제와 일부 지역의 자료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전협정문에 정의된 DMZ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10) 선행연구들에서는 DMZ 면적을 907.3km<sup>2</sup>로 기술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 측정된 값과 약 3.5km<sup>2</sup> 차이를 보인다. 이는 면적 측정에 활용된 지도와 방법 등의 차이에 의한 오차로 생각된다.
  - 11) 군사분계선에 대한 길이는 향후 기본도의 정확도 향상과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 확인 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 文獻

경인문화사, 1997, 1:50,000 북한지도.  
국방부, 2002, 북방한계선에 관한 우리의 입장, 오

성기획인쇄사.

- 김귀곤, 2000, 자연보전 차원에서 본 비무장지대; 습지생태계 본전 및 관리를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합리적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심포지움.  
김동규, 2000,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24.  
김영봉, 2000,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접경지역 이용방안, 국토연구원, 41-42.  
김영봉·이문원, 2004,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5.  
김영봉·이문원·이성수, 2003,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8.  
김원배·안동환·김태윤·채광석·조용원, 2005,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 생태보전과 지속가능 개발방안 연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변병설·이병준·엄상근·구도완·전성우, 2002,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병민·임재경, 2002, 남북한간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정립 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임덕순, 1972, 한국 휴전선에 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지리학, 7(1), 1-11.  
임업연구원, 2000,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 보고서; 1995~2000, 산림청 임업연구원.  
전성우·변병설·이병준, 2003,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4.  
지봉도, 2004,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간 법적 협력방안, 통일연구원, 104.  
차종환·제성호·김병우, 2000, 한국 비무장지대의 식물생태, 예문당.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문, 1953.  
환경부, 2003,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조사결과 종합 보고서, 환경부.

<홈페이지>

구글 어스, <http://earth.google.com>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go.kr>

(집수 : 2007. 7. 18, 채택 : 2007. 8. 9)